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제1637호

다. 제출일자: 2024.2.5.

라. 회부일자: 2024.2.7.

2. 제 안 사 유

-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배출 신고 도입으로 배출부터 수집·운반·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자적 신고 및 관리로 편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분리배출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을 활성화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배출 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고 후 처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자적 관리 및 보고를 통해 편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안 제5조의3제1항).

- 나. 시장은 구청장에게 공사장 생활폐기물 현황 및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5조의3제2항).
- 다.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선별하여 배출하도록 하는 등 소각·매립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안 제5조의3제3항).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 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 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3.11.9.~11.29.) 결과: 의견 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검 토 의 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한 편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폐기물 감량을 통해 2026년 직매립 금지조치에 대비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로 배출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생활폐기물에 포함되어 있고 시·군·구청장이 처리 책무를 가지고 있으나, 성상이 건설폐기물과 유사하여 이의 처리 경로를 따라 민간에서 주로 처리하고 있음.

동 법 제15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려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2년 개정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도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은 시·군·구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필요시 배출자가 시·군·구에 신고한 후 배출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의무 도입을 위한 다양한 대책¹⁾을 수립하고 25개 자치구에 조례로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조례에 해당 사항을 반영한 자치구는 없어²⁾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자치구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음.

1)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 종합대책’(‘22.3.),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 추가대책’(‘22.10.),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관리 개선 계획’(‘23.3.)

2) 마포구는 조례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신고 규정을 일부 담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님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제5호)

- 안 제5조의3제1항은 구청장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고 후 처리하도록 할 수 있고 단계별로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고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제3항은 구청장이 소각·매립 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량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한 것임.

이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주체가 시·군·구청장이고, 상위법상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신고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가 시 조례로 구청장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의3제2항은 시장이 구청장에게 공사장 생활폐기물 현황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정확한 통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책무는 시·군·구청장에게 있지만,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의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 사업의 조정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5조의3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시장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조례 개정 취지에 더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배출 신고를 구청장이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령에서 시·군·구청장에 위임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강행규정으로 수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

개정안	수정의견
제5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 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고 후 처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집·운반·처리 각 단계별로 전자적 방법 등으로 관리하고 보고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신고, 관리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현황 및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선별하여 우선 배출하도록 하는 등 소각·매립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등) ① 시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배출 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고한 후 처리하게 하고, 배출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려는 자가 단계별로 전자적 방법 등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며, 그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라 신고·보고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선별하여 우선 배출하도록 하게 하는 등 소각·매립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